㉾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 [6574]/ 보험팀장 손용석 [6571]/ 팀원 문성현 [6587]/E-mail: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737호

시행일자 2019. 5. 13.

수 신 각 시·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대한개원의협의회장, 대한암학회장

참 조

제 목 crizotinib(잴코리캡슐) 급여기준(공고) 개정 관련 안내

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약제기준부-2068호(2019. 5. 10.)

2. 위와 관련하여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crizotinib(잴코리캡슐) 급여기준(공고) 개정 관련 질의응답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.

3.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'의료정보-의약품정보-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-FAQ'란 및 우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'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'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질의응답 안내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직인생략